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18 선고 2020가단14487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말소등기  
청구의 소]

---

##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피 고 1. B

2. 대한민국

3. C

변 론 종 결 2021. 4. 20.

판 결 선 고 2021. 5. 18.

## 주 문

- 가. 피고 B는 주식회사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4. 8. 6. 접수 제3328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 C은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주식회사 D 등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710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0. 12. ‘주식회사 D는 원고에게 7,787,734,664원 및 그 중 4,234,869,811원에 대하여 2010. 7. 16.부터 2010. 8. 5.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D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8. 6. 채무자 주식회사 D,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4억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08. 9. 23., 피고 C은 2015. 2. 3. 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주식회사 D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 원고에 대한 채무액을 비롯한 10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 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4. 8. 6.에는 성립되었다고 보이므로, 위 2004. 8. 6.로부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한 2009. 8. 6.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는 모두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는 주식회사 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 C은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바, 무자력인 주식회사 D의 채권자로서 주식회사 D를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손해정

## 별지목록

## 부동산의 표시

가. 경기도 양평군  일야 3271㎡

(위 소의 주식회사  소유,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관할)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표시

1.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4년 8월 6일

집수 제33288호 을구 순위번호 제3번

채권최고액 금400,000,000원 근저당권자

